



「技術士 業務關聯 現行法規의 違法條項에 관하여」

(An Existing illegal laws & acts in relation with Engineering Consulting Services by P.E.,)

金 岫 根*

Kim, Suen Guen

1. 머리말
2. 技術士法의 歷史的 背景
3. 資格과 業務가 統合된 單一法規의 國內現況
4. 技術士의 資格과 業務와 關聯된 現行實定法의 問題點과 違憲性 條項

5. 技術士法立法推進의 妥當性
6. 맺는 말
7.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1. 머리말

技術士는 專攻이 技術分野에 屬하여 民主的 法治國家에서 生活하고 技術士業務推進과 事業 展開에 많은 關聯法規(附錄-1 參照) 속에 束縛 되어 있으면서도 無關心하다 할 程度로 法常識活 用으로 權益擁護에 소홀이 하고 있다는 것이 技術士制度(舊技術士法의 發效日을 基點으로 해서)가 이미 滿26年이 經過한 오늘날에도 잘모 르고 口頭禪만으로 權益未洽不滿에 관한 吐露만 하고 있다는 實情이다. 이러한 諸問題點에 關聯 하여 小生이 其間 調查 分析한 一端을 公開하면 서 技術士業務에 關聯된 現行法規의 矛盾點, 未洽한 法條文, 違憲性等에 관해서 밝히고 여러 會員은 이것을 認識하여 技術士法制定을 向한 法廷鬭爭과 立法推進을 併行할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여기에 실린 內容의 一部는 今年 1月 24日과 同年 4月 20日 科技處主催 技術士法制定에 關한

討議와 엔지니어링產業育成을 위한 懸案課題檢 討會議(實은 技術用役育成法改正을 企劃한 內容) 등에서 小生이 밝힌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

2. 技術士法의 歷史的 背景

2.1 舊技術士法의 발자취

1957年에 制定公布된 日本技術士法을 그대로 模倣한 것으로서, 全文38條와 附則2條로 構成되 었으나, 當時 우리의 大先輩(이미 作故한)들이 先進西歐各國의 技術士制度에는 技術士의 法的 受任關係(judicial relations)가 焦點이라는 內容 對比檢討없이 立法化한 것이 오늘날 技術士權益 擁護上 未洽하고 不平不滿(法的 衡平上)의 源泉 的인 要因이라 할 것이다.

舊技術士法(法第1442號)은 資格과 業務 가 統合된 單一法이 있으나 國家技術資格法이 法第2672號로 1973年 12月 31日制定公布되면서 이 法은 1976年 12月 31日 公布法律第2994號

* 土木技術士(港灣 및 海岸) · 韓國技術士會內 技術士法 立法推進委員會 幹事

技術士法廢止法律에 의하여 廢止되었다.

따라서 技術資格統合과 名稱統一법인 國家技術資格法에 資格이 分離된 法에 依存하기에 이르렀다.

2.2 (社)韓國技術士會의 民法團體化

舊技術士法(法第1442號)第32條에 依據하여 設立된 法定法人에서 技術士法廢止法律第2994號(1976. 12. 31)에 의하여 民法第32條에 의한 設立團體로 轉落하여, 오늘날 科技處傘下의 韓國技術用役協會는 技術用役育成法第2474號(1973. 2. 5)第12條에 의한 法定法人團體로서 嫡子視느낌이 드는 反面에 民法團體化한 (社)韓國技術士會는 庶子視取扱받는 느낌마저 든다. 그 事例을 여기에 적어서 吟味하시기 바랍니다.

技術士法廢止法律(法第2994號)의 附則 ②項을 여기에 紹介한다.

「②(韓國技術士會에 대한 經過措置)이 法施行當時 技術士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技術士會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그 定款을 變更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社)韓國技術士會는 1977年 9月 6日에 科技處第49號로 民法32條에 의거한 新規設立된 法人으로서 또다시 1986年 5月 15日 科技處許可番號第11號로 許可가 두번 나온바 있다.

이것은 許可狀에 「技術士法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技術士會는 同法廢止에 따라 民法第32條에 의거하여 法人設立된 것으로 是正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庶子取扱받고 있는 먼저 태어난 長子の 모습인 것이며 法常識에 未洽한 事例인 것이다.

3. 資格과 業務가 統合된 單一法規의 國內現況

3.1 特定法人團體設立과 關聯된 法의 主要條項名

- (1) 辯護士法(法第3594號 1982. 12. 31)
第3條(辯護士의 職務)
第7條(資格登錄) ① 辯護士로서……
第30條(法務法人의 設立)
 - (2) 公認會計士法(法第1797號 1966. 7. 15)
第5條(登錄) ① 公認會計士는……
第12條의 2(會計法人의 設立)
 - (3) 醫療法(法저22533, 1973. 2. 16)
第2條(醫療人)
第3條(醫療機關)
第31條(醫療法人)
- ### 3.2 其他單一法名과 主要條項名
- (1) 建築士法(法第1536號 1963. 12. 16)(3次改正)
第19條(業務內容) ① 建築士는……
第23條(登錄) ① 建築士는……
 - (2) 辨理士法(法第864號, 1961. 12. 23)
第2條(業務) 辨理士는……
第3條(資格)
 - (3) 藥事法(法第1491號, 1962. 12. 13)
第2條(藥師의 定義)
第16條(藥局의 開設登錄) ① 藥師가 아니면……
 - (4) 法務士法(司法書士法)(法第1333號, 1963. 4. 25)
第2條(業務)
第4條(資格)
 - (5) 公認勞務士法(法第3771號, 1984. 12. 31)
第2條(職務의 範圍)
第3條(資格)
 - (6) 船舶職員法(法第3715號, 1982. 12. 31)
第2條(定義) 4. “海技士”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는 者를 말한다.
第4條(免許의 職種 및 等級)
第11條(乘務基準)……海技士를 乘務시켜야 한다.
 - (7) 航空法(法第591號, 1961. 3. 7)
第2條(定義) ③이 法에서 航空從事者라 함은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航空從

事者技能證明을 받은 者를 말한다.

第22條(技能證明 등)

第25條(業務範圍)

第26條(試驗의 實施 및 免除)

(8) 國土利用管理法(法務2408號, 1972. 12. 30)

第29條의 2(土地評價士의 免許등)

第21條의 4 第1項 第1號에 의한 評價 및 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내에서 買收 또는 收用할 土地 其他 權利를 評價하기 위한 業務

(9) 導船法(法第812號, 1961. 12. 6)

第4條(導船士免許)

第10條(導船業務의 開始)

(10) 食品衛生法(法第1007號, 1962. 1. 20. 五次改正)

第34條(調理士)

第35條(營養士)

第36條(調理士의 免許)

第37條(營養士의 免許)

(11) 稅務士法(法第712號, 1961. 9. 9)

第2條(稅務士의 職務)

第3條(稅務士의 資格)

第2章第5條(資格試驗)

위와같이 現行 法名과 資格 및 業務에 관한 條項名(紙面事 情上)만 記述하여 보면 14個의 現行法은 單一法에 의해 法定事業이 法的 權益擁護를 받고 있는데, 唯獨, 技術士만이 資格은 國家 技術資格法에 따르고, 業務는 主로 技術用役育成法에 따라 登錄하여 業體로서 營業行爲 즉, 技術用役業을 營爲하고 있는 實情에 놓여 있다.

그리고, 施工技術士는 建設業法 或은 建設技術 管理法에 의한 建設業 및 施工監理業務等에 從事하고 있고 또, 安全管理技術士는 勞動部의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産業安全診斷業務에 從事하고 있기는 하나, 主宗을 이루고 있는 技術用役業에 從事하는 技術士가 絶對多數라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4. 技術士의 資格과 業務와 關聯된 現行 實定法의 問題點과 違憲性條項

4.1 國家技術資格法의 問題點

1973年 12月 31日 法律第2672號로 全文17條와 附則2條로 構成되어 制定公布된 이 法은 1981年과 1983年의 二次에 걸쳐 改正된바 그 現況은 表-1과 같다.

4.1.1 技術資格의 定義明示條文化未洽

法令의 內容構成上 總則規定中 “定義”條項은 그 業務의 範圍·機(職)能等을 明確히 條文化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2次에 걸친 改正立法에서도 손질한바 없다.

表-1의 註記欄에 明記하다싶이 技術士의 定義는 1963年에 法第1442號에서의 表現보다 더욱 明確化되었다는 것은 日本技術士法(第3次改正分, 1983年)에서 다음과 같이 摘記되어 있다.

“第2條(定義)이 法律에서 「技術士」라 함은 第32條第1項의 登錄을 받고, 技術士의 名稱을 써서 科學技術(人文科學만에 關聯되는 것을 除外하고, 第6條第2項第2號에서와 같다)에 關한 高度의 專門的 應用能力을 必要로 하는 事項에 있어서의 計劃·研究, 設計, 分析, 試驗, 評價 或은 이러한 것에 關한 指導의 業務(他法律에서 그 業務를 實行하는 것이 制限되어 있는 業務를 除外함)를 實行하는 者를 말한다.”

現行 國家技術資格法第2條에는 技術士의 定義가 全然 條文化되지 않았다.

參考로, 摘記하건대, 辯護士, 辨理士, 公認會計士, 建築士, 稅務士, 法務士等其他는 明確하게 그 定義가 條文化되어 있다.

더욱이, 水路業務法(法第4063號, 1988年 12月 31日 改正)은 從前에 定義한 法定用語 4個用語(이것도 辭典에 흔히 나오는 用語) 以外에 7個用語를 追加해서 法定用語로 定義化한것은 複雜多樣化해서 社會的 經濟的發展에 隨伴하여 論爭의 根本素地를 없애게 된 것이라 할 수가

表-1: 國家技術資格法 改定現況(90年現在)(SGK)

年度別	法號別	全文	附則	罰則	特 定 條 項
1973.12.31	2672號	17條	2條	없음	第2條(技術資格의 定義) 이 法에서 技術資格이라 함은 機械·金屬·化工·電氣·電子·通信·造船·航空·土木·建築·纖維·鑛業 및 其他 産業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分野의 資格을 말한다. 第5條(技術資格檢定の 受檢義務) ① 教育法에 의한..., ② 職業訓練法에 의한... 第6條(技術資格檢定の 基準등) ② 主務部長官이 技術資格檢定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1981.12.31	3510號	19條	2條	2條新設(全文條數가 增加함)	第2條의 ② 新設(技術資格名稱使用禁止) 第4條의 ② 新設(補修教育) 第5條 改正(類似檢定の 禁止) 누구든지 法令에 의한 權限없이 技術資格檢定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檢定을 하지 못한다. 第6條의 ②의 條文修正: 科技處長官에서 勞動部長官으로 名稱이 改定되다. 罰則이 2條로 新設追加됨.
1983.12.20	3664號	19條	2條	2條	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技術資格"이라 함은 産業과 관련이 있는 技術分野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士·技能長등 技術分野의 資格을 말한다. (本項改正) 第4條 ③ 項新設 第7條 ③ 項改正 第8條 ② 項改正 第9條 ① 項改正 第10條 ② 項과 ③ 項改正 第12條 ④ 項改正 第13條 ③ 項改正 第15條 2와 4 改正 第16條 ② 項改正

註記: 舊技術士法(法第 1442號, 1963. 11. 11 制定公布되었다가 1976年 12月 31日 法律第 2994號로 廢止됨) 第2條(定義) 이 法에서 「技術士」라 함은 科學技術에 관한 高度의 專門的 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을 要하는 事項에 關하여 이 法에 의한 資格을 얻은 者를 말한다.

있다.

4.1.2 國家技術資格法의 本(母)法條項 몇가지

(ㄱ) 第5條(類似檢定の 禁止)

이 條項中 「...法令에 의한 權限없이...」와 같이 模糊하게 條文化되어 있기는 하나, 이 法令 或은 其他法令인지 分辨할 수 없으나 하역간 后發法令이라 解釋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一例로서

中小企業振興法第3651號, 1982. 12. 31) 第27條(指導資格 및 基準의 作成) 第3項 “...指導士의 資格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으로 定한다”는 母法에 依據하여 同施行令第29條(指導士의 資格)...技術指導士는 別表-2에 定한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로서 商工部에 登錄한 者로 한다... 이와같은 合法的인 類似한 技術士 名稱이 있으나, 科技處가 1977年 7月 16日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을 大統領第8632號로 改正하면서 使用하여 온 認定技術者(認定技術士와 認定技士) 制度를 1984年 12月 31日까지 營爲하다가 1985年 6月 15日 大統領第11706號로 改正하면서 高級技術者라는 用語로 代替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은 母法의 根據없이 施行令을 朝令幕改하는 違法(憲)이 아닐 수 없다. 즉 國家技術資格法第5條에 違背되는 것이라 公式書面化한 것도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89年 3月 某日

理事會에서 小生이 提唱한바 있음)

(ㄴ) 第10條(技術資格取得者에 대한 優待)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1987. 12. 31. 大統領令第12342號)第5條(用役業의 登錄基準)...用役業의 登錄基準은 別表 4와 같다. 이 別表 4의 備考 2. 高級技術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 또는 建築士나 自然系博士學位所持者...”에서 보다시피 母法의 根據없이, 用役登錄基準에서 어떤 資格을 定義하는 法令이 또 어디 있는지, 또 國家技術資格法第10條에서 技術士에 對한 身分保障과 優待施策은 政府가 講究해야 한다는 法理에 違背되는 立法이 되는 것이다. 즉 法的 用語로 된 技術士가 高級技術者(法定用語가 아닌)와 同等하다고 하는 薄待精神은 國家技術資格法立案處인 科技處의 二律背反의인 處事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表-2: 技術用役育成法 改定現況(法第2474號 1973. 2. 5 制定公布)(SGK)

第1次改定: 1876. 12. 31. 法第2993號	第2次改定: 1981. 12. 31. 法第3523號
第2條4項(特殊工場建築物)의 新設 第3條4項(登錄證)의 改正 第4條(用役의 遂行) 5項의 改正 第4條의 2(用役受注의 限度)의 新設 第6條(用役業의 登錄取消등)의 8項改正 第6條의 2項新設 第7條(資料提出 및 實態調査등)의 3項新設 第12條(用役協會의 設立) 6項新設 第13條(罰則)의 3項新設 第15條(過怠料)의 2項新設	第2條1項(技術用役의 定義)의 改正 第2條5項 및 6項의 新設 第3條3項의 改正 第4條1項의 改正 第4條4項의 改正 第4條의 3의 2項改正 第4條의 4의 新設 第5條(金融支援)의 改正...技術人力養成에 ※改正된 部分挿入 第6條1項의 改正 第8條(秘密漏泄禁止)의 改正 第12條(用役協會의 設立)의 4 및 5項의 新設 第12條의 2 新設 第9條(委員會의 設置)의 削除 第10條(委員會의 審議事項)의 削除 第11條(運營規程)의 削除 第14條4項改正 第16條의 改正

備考: 改定狀況 한 集計: 新設條號 11件, 改正條項 13件, 削除條項 3件, 合計 27件

4.2 技術用役育成法の 違憲性

4.2.1 技術用役育成法과 同施行令의 발자취
母法은 지금까지 두번 部分改定한바 있고, 施行令은 1987年 12月 31日까지 8번 改定한바

있으나, 1990年 6月 15日 公告에 의하면 第9次改定을 企劃中에 있다.

母法の 改定狀況은 表-2와 같고, 同施行令의 年度別, 領別, 特定改定事項 및 科技處告示中 主要한 關聯分만 要約한 內容은 表-3과 같다.

表-3: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改定 및 科技處告示狀況(SGK) 1990. 7. 14. 現在

年度別	領第號別	特 定 事 項	備 考
1973.9.7	6845	1) 資本金 200~500만원以上 2) 建物面積 30~50m ² 以上 3) 土木部門은 一般土木과 水資源分野의 2個部門으로 分類하여 該當 技術士 4人以上 要確保토록 함(專門用役業이라 稱하여)	制定公布
1977.7. 16	8632	1) 第3條(用役業의 種類)改定: 플랜트·엔지니어링用役業(化學工場·一般産業工場·發電所·原子力産業); 綜合建設技術用役業, 專門技術用役業으로 分類함. 2) 附則第2條(認定技術士) ③ 認定技術士의 認定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科技處長官이 定한다. ④...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1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1次改定 認定技術士 登場始作
1977.9.1		科技處告示第18號 認定技術士新設告示(附則第2條第3項에 의거)	
1978.9.18	9161	附則第4條 ②와 ③ 新設되다.(認定技術士의 職場異動에 따른 有效化)	第2次改定: 認定技術士의 活用範圍擴大
1979.1.22		科技處告示第22號 認定技術士 認定基準(告示第18號, 1977. 9. 1 代替함)	(違法)
1979.8.27	9564	1) 附則第2項과 附則 ③ 經過措置의 改定 및 新設, 認定技術士와 認定期間은 如前이 1981年 12月 31日까지로 함	第3次改定
1981.12.31	10657	1) 附則第2條 ④項改定: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2年 11月 30日까지로 한다.	第4次改定
1982.8.18	10904	1) 第3條와 第16條改定 2) 附則第2條改定으로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함	第5次改定
1984.12.31	11612	1) 附則(5번째) ③(技術人力에 關한 經過措置)...認定期間 1987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함 2) 別表-4의 비고 2에 高級技術者의 定義가 있음 3) 專門技術用役業에 認定技術士 2人 以上 4) 綜合環境技術用役新設(第3次의 改定)	第6次改定, 高級技術者 用語쓰기 始作함
1985.12.13	11800	1) 第2條 ②項新設 2) 第14條1項 2, 3號削除 및 ⑤號改正 3) 附表-4의 一部改正함	第7次改定
1985.12.27		科技處告示第85-12號(科技處告示第84-4號의 改定) 高級技	

		術者の 經歷審査基準(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別表-4의 비고 2에 근거함)	
1987.12.31	12342	1) 附則 ③(技術人力에 관한 經過措置)…認定期間을 1990年 12月 31日까지로 함	第8次改定
1988.2.10		科技處告示第88-5號 專門技術用役業登錄基準의 技術人力中 技術士代身高級技術者로 代替認定範圍	
1989.1.10		科技處告示第88-18號로 電氣通信 1個 部門分野만을 技術士 2人中 1人을 高級技術者로 代替登錄告示함. 단 1988年까지 登錄한 기존업체는 1989. 12. 31까지 技術士 2人을 모두 高級技術者로 대체 인정함.	
1990.6.15	公告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및 施行規則改定令 6個主要骨子中, 案第5條第1項 “別表-4” 비고 2項 高級技術者라 함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 또는 建築士 나. 自然系列의 博士學位所持者 다.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1級技士資格을 取得한 后 關聯分野에 10年 以上 勤務한 者 라. 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이에 準하는 學校에서 自然系列에 屬하는 學科를 卒業한 者로서 關聯分野에 10年 以上 勤務한 者(科技處長官이 定하는 專門分野의 경우는 專攻學科를 不問한다)	第9次改定案

註記: 違憲對象: 1) 高級技術者의 定義를 別表-4, 비고 2項에서 定義한 點(母法의 근거없이)
2) 科技處告示第88-12號로 高級技術者의 經歷審査基準을 定한 것은 國家技術資格法第5條 (類似資格禁止)에 違反된다.

4.2.2 違憲論提起上的 參考事項

(ㄱ) 改正憲法(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
이 憲法中 技術士에게 절실한 條項만 적기로 한다.

第11條①項: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第22條②項: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27條③項: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通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努力하여야 한다.

(ㄴ) 法令의 內容(構成) ※ P.P. 88, 90年度 技術士補修教育教材

法令의 內容은 i) 總則(目的·定義등), ii) 本則(認許可등), iii) 補則(手數料·報告·聽問등), iv) 罰則(過怠料·課徵金등), v) 附則(施行日·經過措置등) 등의 規定으로 構成되는 立法原理로 볼 때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의 附則內容은

立法原理와 相反되는 事項이 規定화된 것을 알 수 있다.

4.2.3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의 違憲性

(1) 母法의 근거없이 高級技術者의 定義를 同令 別表-4, 비고-2項에서 定義할 수 없는데도 立法原則을 無視違背되고 있다.

“技術用役育成法第3條(登錄) ① 用役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營業의 種類別로 科學技術處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用役業을 登錄하기 위해 高級技術者라는 非法定用語를 使用하여 立法權을 超越한 資格 定義를 條文化, 그것도 附表의 備考欄에서 規定 짓는다는 것은 儼然한 違憲임을 主張하는 바이다. 특히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高級技術者의 檢定(認定審査)을 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同施行令 別表-4, 비고-2項에 依據하여 行政告示인 科技處告示第88-12號로 “高級技術者의 經歷審査基準을 定하여 1985年 12月 27日에 從前的

科技處告示第 84-4 號를 改正告示한바 있다.

國家技術資格法第 5 條에는 어떤 形態이든 法令에 의하지 않고는 類似檢定을 할 수 없음에도 不拘하고 이와같은 行政告示로 違憲하면서까지 高級技術者制度를 高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4.3 建設技術管理法(法第 3934 號, 1987 年 10 月 24 日 公布)의 問題點

(ㄱ) 同法第 2 條(定義) 3 項(建設技術用役) 中 施工監理라는 用語以外에는 이 法第 1 條(目的)과는 相反되는 것이다.

(ㄴ) 이 法第 2 條 5 項(建設技術者)의 定義는 建設業法(1958. 3. 11. 法第 477 號, 最近改正 1988. 12. 31. 法第 4075 號)第 2 條(定義) ⑨ 項과 同一한 表現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建設業法에서 從事하는 者와 建設技術管理法에 의거한 業務 從事時와 區別하기 위해 建設技術管理法에서는 建設技術管理者로 變更하여야 한다.

(ㄷ) 兼職禁止 및 이에 대한 罰則 등이 條文化 되어 있지 않아서, 한구름會社內에서는 同一人이 거이 同時에 施工(現場代理人) 技術士와 施工監理擔當者로 屯갑할 수 있는 法施行上의 素地가 潛在하여 있다고 본다.

(ㄹ) 建設業體의 施工上 혹은 契約上 其他要因에 따른 仲裁(Arbitration)發生時 司法三審制度에 의한 裁判을 받는 筈에 없다.

先進化·國際化에 對備하여 西歐先進國처럼 建設工事仲裁制度化的 法的確立을 促求한다.

5. 技術士法立法推進의 妥當性

社會的·法的基盤이 未成熟한 後進國型的 技術用役育成法과 同施行令을 對比하건데 先進國 日本의 最新改正된(1983 年 4 月) 技術士法과 同施行令의 立法上의 特徵을 表-4 에서 보다시피 母法은 63 個條와 附則 15 條로 構成되고, 施行令은 全文 4 條와 附則으로 되어 있어서 行政府가 官主導的·便宜的·恣意的·非民主的(違憲的)으로 改定하기 希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施行令改定公告案까지 9 次에 의하므로

施行令制定公布后 平均 1.9 年에 한번씩 改定하게 된 것은 朝令暮改·社會的 및 法的 基盤未成熟 혹은 貧困型法制社會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國家技術士法이 立法推進에 그 妥當性과 合法的 要因을 간단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資格과 業務가 統合된 單一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他實定法의 事例(14 개)와 같이 衡平의 原則에 相反된다.(憲法第 11 條)

(2) 現行國家技術資格의 法條文의 未洽과 技術用役育成法의 違憲性에 立脚해서 新立法의 推進 妥當性은 合憲的이고 合法的 推進이 될 수 있다.

(3) 社會的·經濟的發展과 時代潮流에 符合되어야 하기 때문에 惡法은 廢法化시키고 新立法으로 代替되어야 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4) 民主化·先進化·國際化·開放化에 對處해야할 法體系의 整備改廢上 不可避하게 新立法 推進을 促求하고 있는 實情에 놓여 있다.

(5) 先進西歐의 技術士制度처럼 法的受任關係와 資本主義社會發展에 隨伴되는 諸般의 權益을 新設條文化되는 新立法推進이 先進社會로 指向하는데 絶對的으로 필요하고도 충분한 法條項으로 權益擴大와 擁護가 절실하다.

6. 맺는 말

技術士制度化以后 技術士業務上 關聯된 法規常識에 未洽하거나 그간 等閑視해 왔던 우리가 지금에 와서 겨우 技術用役育成法의 違憲性을 認知하게 된 것은 晩時之嘆이 있으나 技術士立法 推進에 늦지 않았다고 본다.

7.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1) 法典, 趙相元編著 1990 年版, 玄岩社發刊
- (2) 日本技術士關係法令集, 1984 年 7 月 日本技術士會發刊
- (3) 技術士會誌(創刊號부터 現在까지)
- (4) 「土木法規의 基礎」(改訂版), 岸本進, 天津公宏共著 工學出版(株) 1990 年 2 月 發刊
- (5) 韓國技術士會刊, 90 年度技術士補修教育用 教材 法制處法制企劃官 安昌洙 “法令의 制定과 그 運營” pp.79~97.

表-4: 日本技術士法, 同施行令의 立法上의 特徵

1. 日本技術士法(1983年 4月制定公布·法第25號)
全文63條와 附則15條로 構成됨
 2. 日本技術士法施行令
全文4條와 附則으로 構成됨
 3. 技術士法の 施行에 따르는 關係政令의 整備에 관한 政令(1983年 12月 政令第27號)
全文5條와 附則 3項으로 構成됨
 4. 指定試驗機關과 指定登錄機關에 관한 規則(1983年 12月 總理府令第44號)
全文25條와 附則으로 構成됨
 5. 技術士法施行規則(1983年 3月 總理府令第5號)
全文23條와 附則 4項으로 構成됨
 6. 技術士法第11條第1項의 規定에 基礎한 指定機關指定件(1984年 2月 1日 科技處告示第1號)
全文4項으로 構成됨
 7. 技術士法第40條第1項의 規定에 基礎한 指定登錄機關指定件(1984年 2月 1日 科技處告示第2號)
 8. 技術士法施行規則(1984年 總理府令第5號) 第5條第4項과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基礎한 第1次試驗專門科目의 範圍와 第二次試驗選擇科目內容의 規定件(1984年 3月 21日 科技處告示第8號)
 9. 技術士審議會令(最終改正(1983年 12月 31日 政令第27號))
- § 韓國의 技術用役育成法·同施行令·施行規則·告示等의 特徵
1. 技術用役育成法(1973. 2. 5. 法第2474號)
全文17條와 附則 두개로 構成됨
 2. 同施行令(1973. 9. 7. 大令第6045號 8次改正합)
全文31條와 附則 8개조로 構成됨
附錄-1: 技術士業務關聯法令名稱리스트
1. 大韓民國憲法(1988. 2. 25 施行)

〈ㄱ部〉

2. 建設共濟組合法; 5 國土開發研究院法
3. 建設業法 및 同施行令; 6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4. 建築法 및 同施行令
5. 國土開發研究院法
6. 公益法人의 設立
7. 建築士法 및 同施行令
8. 高壓가스 安全管理法 및 同施行令
9. 工產品品質管理法 및 同施行令
10. 工業配置法 및 同施行令
11. 工業標準化法 및 同施行令
12. 公有水面管理法 및 同施行令
13. 公有水面埋立法 및 同施行令
14. 科學技術振興法
15. 鑛山保安法 및 同施行令
16. 鑛業法 및 同施行令
17. 國家技術資格法 및 同施行令
18. 國土建設綜合計劃法 및 同施行令
19. 國土利用管理法 및 同施行令
20. 勤勞基準法 및 同施行令
21. 技術開發促進法 및 同施行令
22. 技術用役育成法 및 同施行令, 同施行規則
23. 工業發展法, 同施行令과 同施行規則

〈ㄷ部〉

24. 大型工事契約에 관한 豫算會計法施行令特例 規程 / 大型工事公告에 관한 規則
25. 道路法 및 同施行令
26. 都市가스事業法, 都市公園法, 都市再開發法
27. 都市計劃法 및 同施行令
28. 都市公園法 및 同施行令
29. 都市再開發法 및 同施行令

〈ㄴ部〉

30. 發明保護法 및 同施行令
31. 辨理士法 및 同施行令
32. 辯護士法 및 同施行令

《入部》

- 33. 産業設備輸出促進法 및 同施行令, 同施行規則
- 34. 産業安全保健法 및 同施行令
- 35. 商事仲裁規則
- 36. 訴請節次規程
- 37. 水道法 및 同施行令
- 38. 水産業法 및 同施行令
- 39. 食品衛生法 및 同施行令
- 40. 實用新安法 및 同施行令
- 41. 水産業法 및 同施行令
- 42. 設計審査委員會規程 및 施行規則
- 43. 産業災害補償保險法 및 同施行令
- 44. 山林法 및 同施行令과 施行規則
- 45. 消防法 및 同施行令과 同施行規則
- 46. 船舶法 및 同施行令
- 47. 船舶安全法 및 施行令
- 48. 水産振興法 및 同施行令

《○部》

- 49. 漁船法 및 同施行令
- 50. 漁港法 및 同施行令
- 51. 에너지利用合理化法 및 同施行令과 同施行規則
- 52. 豫算會計法 및 同施行令
- 53. 豫算會計法施行令臨時特例에 관한 規程
- 54.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및 同施行令
- 55.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 56. 外資導入法 및 同施行令
- 57. 外國換管理法 및 同施行令과 施行規則
- 58. 意匠法 및 同施行令
- 59. 汚物清掃法 및 同施行令과 同施行規則

《ㄱ部》

- 60. 電氣工事業法 및 同施行令
- 61. 電氣通信工事業法
- 62. 電氣通信基本法
- 63. 電波管理法
- 64. 住宅開發促進法 및 同施行令

- 65. 住宅建設促進法 및 同施行令
- 66. 重機管理法 및 同施行令
- 67. 中小企業基本法 및 同施行令
- 68. 中小企業振興法 및 同施行令
- 69. 仲裁法
- 70. 中央設計審査委員會運營細則
- 71. 陳情書등 處理에 관한 規程
- 72. 地籍法 및 同施行令과 施行規則

《ㄴ部》

- 73. 請願法
- 74. 測量法 및 同施行令
- 75. 草地法 및 同施行令과 施行規則

《ㄷ部》

- 76.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ㄹ部》

- 77. 土地開發公社法
- 78.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및 同施行令
- 79. 土地收用法 및 同施行令
- 80. 統計法 및 同施行令
- 81. 特許法 및 同施行令

《ㅎ部》

- 82. 下水道法 및 同施行令
- 83. 河川法 및 同施行令
- 84. 港湾法 및 同施行令
- 85. 海洋汚染防止法 및 同施行令
- 86. 海外建設促進法 및 同施行令과 同施行規則
- 87. 行政審判法
- 88.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法
- 89. 環境政策基本法
- 90. 大氣環境保全法
- 91. 水質環境保全法
- 92. 騒音振動規制法
- 93.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94. 環境汚染被害紛爭調停法
- 95. 韓國科學技術院法 및 同施行令